# 샘플발송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통상거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 **「샘플발송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」**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샘플발송 지원사업

○ 사업기간 : 2025년 3월 ~ 12월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

○ 지원대상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

-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업체

- 바이어의 샘플 발송 요청이 있는 업체

(또는 해외통상거점센터 상설전시장에 샘플전시를 원하는 업체)

## 2. 지원내용

구 분	지 원 내 용			
지원내용	사업공고일 이후 특송업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발송한 샘플발송비 지원 ※ 사후관리 지원 - 참여업체 물류 이슈 사항 거점센터의 현지 피드백 제공 - 바이어 요청 시 온라인상담 지원(번역, 상담일지 등)			
지원국가	베트남, 인도			
지원한도	업체당 연간 최대 500천원 限 (VAT 제외) ※잔여예산에따라 변경가능			
지원방법	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			
지급사항	- 물류비 공급가액의 80% 지급(자부담 20%) - 업체별 지원 한도내 건별/일괄 신청가능 - 신청일 기준 익월 일괄지급(십원이하 절사) - 부가세, 관세, 수입세 등 각종 국내외 제세공과금 <u>지원불가</u>			

# 3. 사업 지원절차

샘플발송 및 비용지출	₽	지원사업 건별/일괄 신청	적격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	_	지원금지급
기업	7	기업→우리원	우리원→기업		우리원→기업

## 4. 신청 및 문의

- 신청.접수기간 : **2025. 3. 12.(수) ~ 상시모집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**
- 신청방법 :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(https://jbexport.or.kr) 온라인 접수
  - ※ 최초 신청시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신청 2차 신청부터 담당자 이메일로 [신청서와 지출증빙서류]제출
  - ※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
- 문의처 : 수출전략팀 장유진 담당관 (전화 : 063-711-2162 / 이메일 : yj612@jbba.kr)
- 제출서류

구분	제 출 서 류	비고		
1	지원사업 신청서(법인인감 날인)	서식 1		
2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서식 2		
3	사업자등록증 사본	지원자격		
	공장등록증명(본사가 전라북도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)			
4	바이어의 샘플요청 증빙(상담일지, 이메일 캡처본 등)	확인용		
5	기업통장사본(기업명의必)			
6	[전자세금계산서+송금내역서] 또는 [카드결제상세내역서]			
7	운송·특송업체 발행 운송비인보이스 (C/I) ※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상세내역서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	지출증빙		
8	패킹리스트(P/L)			
9	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운송장(AWB)			

## 5. 선정제외 대상

- 신청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
-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(도박·사치·향락,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)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 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세소합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	46102中	담배 중개업
도매 및 소매업	46~47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 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임대업	76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기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
## 6. 유의사항

-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, 발송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이 불가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서류 미비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탈락처리 예 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된 경우, 보완하여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- ※ 단, 신청건별 선착순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旣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0.01.01.)에 따라 각종 공공 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 가금이 부가됩니다.

2025. 3. 12.

